

2020년도 제17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7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0년 05월 20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I. 응시분야

-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중앙, 중환자, 호스피스(총 12개 분야, 보건제외)

II.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0. 5. 25.(월) 10:00 ~ 6. 5.(금) 18:00		· 1차시험 면제자 및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접수자도 동일기간에 응시원서 접수 필요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단,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는 추가서류 우편접수 병행)		· 본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자격시험응시」 클릭 (http://www.kabone.or.kr)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수험표 출력		2020. 6. 24.(수) 14:00 이후		·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수험표는 개별 출력하여 지참
시험시행	1차시험	일시	2020. 7. 19.(일) (1) 입실가능: 09:00부터 (2) 입실완료: 10:00까지 (3)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10:00 ~ 10:30 (4) 시험시간: 10:30 ~ 13:00(150분)	· 10:00 이후 입실 불가
		장소	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시 중구 소재) (http://hanyang.sen.hs.kr)	· 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
	2차시험	일시	2020. 8. 23.(일) (1) 입실가능: 09:00부터 (2) 입실완료: 10:00까지 (3)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10:00 ~ 10:30 (4) 시험시간: 10:30 ~ 12:10(100분)	· 2차시험 접수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응시수수료 납부로 갈음함. 납부기간: 2020. 7. 31.(금) 14:00 ~ 8. 7.(금) 18:00까지
		장소	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시 중구 소재) (http://hanyang.sen.hs.kr)	· 1차시험 합격자, 면제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합격자 발표		1차시험	2020. 7. 31.(금) 14:00 이후	·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SMS 개별 통보(최종 합격자에 한함)
		최종	2020. 9. 11.(금) 14:00 이후	

Ⅲ. 응시자격

1. **교육과정 수료(예정)생**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
3. **1차시험 면제자** - 2019년도 제16회 전문간호사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

Ⅳ.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시험과목	공 통	간호연구, 간호이론, 약리, 병리, 상급건강사정,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전 공	상급전문간호
시험방법	1차시험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총 150문제 150점/ 1문제당 1점)
	2차시험	실기시험(시나리오 중심 서술형, 총 2사례 100점)
시험기준	분야별 시험 출제기준(본원 홈페이지 자격시험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기준 참조)	

Ⅴ.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접수

- 기간: 2020. 5. 25.(월) 10:00 ~ 6. 5.(금) 18:00
- 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만 가능하며, 본원 홈페이지 하단 「자격시험응시」 클릭한 후 접수

※ 단,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는 응시자격 심사 서류 우편접수 병행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551번의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공고’ 참조

- 접수 확인: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접수현황

2. 제출서류

구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예정)생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접수자)	비고
응시원서	응시원서(온라인 작성)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심사 신청서(양식 작성)	양식: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공고 참조
첨부서류	① 실무경력 확인서 [양식 1] ※ 증명서류(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는 응시서류로 제출하지 않음. ② 수료(예정)증 [양식 2] ※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③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① 자격증 사본 ② 해당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③ 교육 수료증 또는 졸업증명서 ④ 교과과정표(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 ⑤ 기타 추가 요청자료(개별통지)	※ 스캔 파일첨부 (jpg, PDF 등)
응시료 납입	④ 1차시험 응시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⑥ 응시자격 심사수수료 및 1차시험 응시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 납입 증명서류: 인터넷뱅킹 거래화면 캡처 파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명세서 스캔 파일 등
(거래일시, 입금자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서류심사 결과 및 수험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및 수험표는 **6월 24일(수) 14:00 이후**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수험표는 응시자가 개별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4. 응시수수료

1) 납부방법: 계좌이체

구분	대상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입금계좌
1차 시험	교육과정 수료(예정)생	300,000원	2020. 5. 25.(월) 10:00 ~ 6. 5.(금) 18:00	신한은행 140-009-638383 (예금주: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330,000원 (응시자격 심사 수수료 포함)		
2차 시험	1차시험 합격자	300,000원	2020. 7. 31.(금) 14:00 ~ 8. 7.(금) 18:00	
	1차시험 면제자			

※ 입금 시 반드시 **응시분야명(2글자)**과 **응시자 본인 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예) 가정분야 응시자 김○○ → “가정김○○”, 감염관리분야 응시자 이○○ → “감염이○○”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	기간	환불 금액
1차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본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5.25. ~ 6.5.)	
	시험 시행일 20일 전(6.6. ~ 6.2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험 시행일 10일 전(6.30. ~ 7.9.)	
	시험 시행일 9일 전(7.10. ~)부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2차시험	납부기한 내(7.31. ~ 8.7.)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 10일 전(8.8.~ 8.13.)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험 시행일 9일 전(8.14. ~)부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자격시험 취소 절차는 [붙임] 참조

※ 수수료 환불은 본원 회계 규정에 따라 매달 15일과 말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소 후 응시수수료 반환요청서 접수 시기에 따라 실제 환불일은 달라질 수 있음.

VI.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2.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0. 7. 31.(금) 14:00 이후
-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0. 9. 11.(금) 14:00 이후
(합격 여부는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최종 합격자는 SMS 개별 통보)

VII.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응시원서 및 관계서식 작성방법]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함.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등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향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응시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응시원서 및 관계서식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일어나는 불이익은 응시생 책임임.
- 답안카드 열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 자료실 8번 ‘자격시험 답안카드 열람 지침’ 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문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자격관리팀(☎1833-6230, ARS 3번, ✉ apn@kabone.or.kr)

[응시원서 및 관계서식 작성방법]

○ 응시원서 작성방법

1. 응시원서는 인터넷 상에서 작성하고, 제출서류(①~④)는 각각 스캔하여 파일(jpg. PDF 등)로 첨부함.

제출서류	내 용
① 실무경력 확인서	[양식 1] 에 응시자가 작성 및 서명, 기관장 직인(스캔파일 첨부)
② 수료(예정)증	[양식 2] 에 기관장이 작성, 기관장 직인(스캔파일 첨부)
③ 간호사 면허증 사본	스캔파일 첨부
④ 응시수수료 납입확인증	스캔파일 첨부(예: 인터넷뱅킹 거래화면 캡처파일,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거래명세서 스캔파일 등)

2. 증명사진은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3.5cm x 4.5cm 크기**, 50KB 이하의 파일(jpg.)을 첨부 (**※ 증명사진은 시험장에서 응시자 확인 시 사용됨**).

3. ‘면허번호’ 는 간호사 면허번호 기재, ‘면허취득일’ 은 간호사 면허증에 기재된 년, 월, 일을 기재함.
4. ‘성명’ 은 ‘한글’ 과 ‘한문’ 으로 기재함(※ 한글 이름의 경우 한글로만 기재).
5. ‘국적’ 은 ‘대한민국’ 으로,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국명을 정확히 기재함.
6. ‘응시분야’ 는 해당 전문간호사 분야를 기재함.
7. ‘응시구분’ 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
 - 1차 응시(국내): 2020년도 최초 응시자
 - 1차 응시(국외):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접수자
 - 1차 면제(국내): 2019년도 제16회 전문간호사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
8. ‘응시자격 구분’ 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
 - 수료생: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자
 - 교육과정생: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 예정자
 - 외국자격자: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응시자격 인정 심사 접수자
9. ‘현주소’ 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함.
10.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은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
11. ‘학력’ 은 학위별로 취득연월일과 수여대학을 정확히 기재함.
12. ‘교육기간’ 은 교육개시 년, 월, 일(입학일자) ~ 교육수료 년, 월, 일(수료 혹은 예정일자) (예: 2018년 3월 2일 ~ 2020년 2월 29일)로 기재하고, 교육기관명을 정확하게 선택함.
13. ‘등록번호’ 는 교육기관에 등록 시 부여받은 학번을 기재함.
14. ‘현금영수증 신청’ 은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 시에는 ‘개인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증빙용’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함.
15. ‘직장명’ 과 ‘근무부서’ 는 현 직장을 의미하며, ‘근무기간’ 은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총 근무기간을 의미함. 현 직장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실무경력 확인서 작성방법 [양식 1]

1. ‘교육개시일’ 은 입학일자로 함.
2.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 를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함.
※ 교육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실무경력만 기재함.
3. ‘부서명’ 에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함.

분야	실무경력인정기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감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한국산업간호협회,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구조대 · 종합병원 ·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심장·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근골격계, 비뇨·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00병상 이상의 군병원(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호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위 표에서 ‘감염관리’ 및 ‘응급’ 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 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실무경력 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작성일자’와 ‘응시자’의 성명을 기재 후 서명(또는 도장)해야 함.
5. ‘교육기관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함(직인).

○ **학력증명서 작성방법 [양식 2]**

1. 왼쪽 상단의 발급번호 ‘제 - 호’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함(기재 필수).
2. 교육개시 년, 월, 일(입학일자) ~ 교육수료 년, 월, 일(수료 혹은 예정일자)(예: 2018년 3월 2일 ~ 2020년 2월 29일)로 정확히 기재하고, 응시원서에 기재한 ‘교육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3. ‘교육기관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장을 의미함(직인).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문제,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음.
2.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수험번호별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실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등), 수정테이프
 -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

- 수험표를 분실한 자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수험생의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응시자 스스로 시험시간을 잘 배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시험실에 시계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반드시 확인 바람(스마트 워치 등 계산, 통신이 가능한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에는 배탈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4. OMR답안카드 작성법
 - 분야명,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함.
 - 시험실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아라비아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해당 숫자 해당란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함.
 - 답안 표기 방법 예시

바르게 표기한 것		잘못 표기한 것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2곳에 표기한 것 반만 표기 한 것, 불완전한 수정처리 지운 흔적이 있는 것, 불완전한 수정처리 주위만 표기한 것 가운데만 표시한 것

5.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 (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OMR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OMR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됨.
- OMR답안카드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OMR답안카드를 교체할 수 있음.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OMR답안카드 및 2차시험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상이하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2차시험 답안 작성 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기입함.
- 2차시험 답안 수정 시 적색펜으로 두 줄을 긋고 흑색으로 다시 재작성함(수정테이프 사용불가).

6. 부정행위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결제·통신기능 블루투스, 스마트기기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 종료 후에는 OMR답안카드 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해야 함.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문제 및 정답을 적어가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OMR답안카드나 답안지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및 본원 자격시험 시행지침에 따라 그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다음 연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오시는 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한양공업고등학교
- 대중교통 :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도보 1분)
(버 스) 아래 약도 참조(정류장명, 정차하는 버스번호)
- 약 도 :



붙 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취소 절차 1부.

<끝>

실무경력 확인서

성 명	응시분야	교육기관	교육개시일(입학일)
			년 월 일
해당 실무 경력 내용			
근무기간 (년,월, 일 - 년,월,일)	근무일수 ()년()개월()일	기관명	부서명
해당실무 총 근무 일수(환산계) : ()년 ()개월 ()일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_____ (서명 또는 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
(○○대학교 ○○대학원 장)

직인

[양식 2] (교육기관장 작성)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수료(예정)증

성 명 :

생년월일 :

간호사면허증번호 제 호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예정)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
(○○대학교 ○○대학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취소 절차

□ 응시취소 절차

절 차	대 상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제17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첨부파일, <u>응시수수료 반환요청서</u> 다운로드	자격시험 응시자
↓	
<u>응시수수료 반환요청서</u> 작성 후 자격시험 담당자 전자우편(apn@kabone.or.kr)으로 발송	자격시험 응시자
↓	
담당자 접수 후 확인 메일 발송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접수 완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응시수수료의 반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90호, 2017.3.28.] 제9조」

구 분	기 간	환불 금액
1차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본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5.25. ~ 6.5.)	
	시험 시행일 20일 전(6.6. ~ 6.2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험 시행일 10일 전(6.30. ~ 7.9.)	
	시험 시행일 9일 전(7.10. ~)부터	
2차시험	납부기한 내(7.31. ~ 8.7.)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 10일 전(8.8.~ 8.13.)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험 시행일 9일 전(8.14. ~)부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수수료 환불은 본원 회계 규정에 따라 매달 15일과 말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소 후 수수료 반환요청서 접수 시기에 따라 실제 환불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833-6230, 내선번호 3번나 전자우편(apn@kabone.or.kr)으로 문의